울 산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나1819 손해배상(자)

원고, 항소인겸피항소인

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, 담당변호사 박현갑

피고, 피항소인겸항소인

주식회사 C (종전 상호: D 주식회사)

대표이사 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, 담당변호사 전은수

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. 3. 4. 선고 2013가단30805 판결

변론종결 2016. 1. 13.

판 결 선 고 2016. 1. 27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
피고는, 원고 A에게 25,297,630원, 원고 B에게 24,497,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9. 3.부터 2016. 1. 2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- 2.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 중 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- 4.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167,184,091원, 원고 B에게 163,184,0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9. 3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다.

피고는 원고 A에게 116,625,006원, 원고 B에게 113,425,0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9. 3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

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책임의 발생

(1) 사실의 인정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9호증의 3 내지 24, 을 제1호증의 2 내지 25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증인 H, I의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- (가) F은 2013. 9. 3. 21:5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망양리 소재 온양LPG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네삼거리 방면에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위 도로의 제1차로에 쓰러졌다(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).
- (나) G은 2013. 9. 3. 21:56경 ○○주○○○○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차로에 쓰러져 있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 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F의 몸을 역과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머리,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(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).
- (다) 원고 A은 F의 부, 원고 B은 F의 모이며, 피고는 G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(2)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다른 사정이 없는 한 G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G의 보험자인 피고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F이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로 인한 것이고,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G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, G 및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, 또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G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,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책임의 제한 여부

갑 제9호증의 3 내지 24, 을 제1호증의 2 내지 25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증인 H, I의 각 증언, 제1심법원의 울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, F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.144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선도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, F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하되 그 과실비율은 60%로 정함이 상당하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F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

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,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,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/12%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.

가. 일실수입

(1) 인적사항: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.

[기초사항]

성별	남자	사고시 연령	30세 7개월 16일		
생년월일	1983. 1. 18.	가동연한	60세		
사고발생일	2013. 9. 3.	가동연한일	2043. 1. 17.		

- (2) 직업 및 경력: F은 2013. 6. 13. 주식회사 TCT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.
- (3) 가동기간: 사고일인 2013. 9. 3.부터 가동연한일인 2043. 1. 17.까지

(4) 소득

- 사고일인 2013. 9. 3.부터 F이 주식회사 TCT에 입사한지 1년이 되는 2014. 5. 12.까지는 월 1,666,666원 (1년차 연봉 20,000,000원 / 12개월)
- 그 다음날인 2014. 5. 13.부터 주식회사 TCT의 취업규칙상의 정년일인 55세 가 되는 월의 말일인 2038. 1. 31.까지는 월 1,916,666원 (원고가 구하는 2년 차 연봉 23,000,000원 / 12개월)
- 그 다음날인 2038. 2. 1.부터 가동연한일인 2043. 1. 17.까지는 원고가 구하

는 바에 따라 201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기준 1,907,092원 (86,686원 × 22일)

(5) 생계비: 수입의 1/3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3호증,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제1심법 원의 주식회사 TC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(6) 계산

	기간 초일	기간 말일	월수입	생 계 비	m1	호프맨	m2	<u>কম</u> ণ্ড2	m1- m2	적 용 호프만	일실수입
1	2013.9.3.	2014.5.12.	1,666,666	1/3	8	7.8534	0	0	8	7.8534	8,725,996
2	2014.5.13.	2038.1.31.	1,916,666	1/3	292	190.7669	8	7.8534	284	182.9135	233,722,724
3	2038.2.1.	2043.1.17.	1,907,092	1/3	352	216.3912	292	190.7669	60	25.6243	32,578,598
합 계(원)								275,027,318			

나. 일실퇴직금

- (1) 퇴직금의 근거 및 산정방식: 주식회사 TCT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에 대하여 1개월분 평균임금
- (2) 입사일: 2013. 6. 13.
- (3) 퇴직예정일: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인 2038. 1. 31.
- (4) 실제퇴직일: 사고일인 2013. 9. 3.
- (5) 입사일부터 퇴직예정일까지의 근속기간: 24년 7개월 19일
- (6) 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: 2개월 22일

(7)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: 월 1,916,666원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3호증,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제1심법 원의 주식회사 TC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(8) 계산

- 입사일부터 퇴직예정일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
 - : 47,118,039원 {1,916,666원 × (24 + 7/12)}
- 위 금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

: 21,256,258원 [47,118,039원 ÷ {1 + 0.05 × (24 + 4/12)}]

○ 일실퇴직금: 21,256,258원

다. 장례비: 4,000,000원 (원고 A이 지출)

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 A이 장례식장 이용비 등으로 합계 5,718,5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,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, F의 나이,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 중 4,000,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4,000,000원으로 한정한다.

라. 과실상계

- (1) F의 과실비율: 60%
- (2)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
 - ① 일실수입: 110,010,927원 (275,027,318원 × 0.4)
 - ② 일실퇴직금: 8,502,503원 (21,256,258원 × 0.4)

② 장례비: 1,600,000원 (4,000,000원 × 0.4)

마. 위자료

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, F과 원고들의 관계, 원고들이 G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,000,000원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, F에 대한 위자료는 25,000,000원,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2,500,000원으로 각 정함이상당하다.

바. 상속관계

- (1) 상속대상금액: 143,513,430원 (일실수입 110,010,927원 + 일실퇴직금 8,502,503 원 + 위자료 25,000,000원)
- (2) 상속인 및 상속지분: 원고들 각 1/2
- (3) 계산: 71,756,715원 (143,513,430원 × 1/2)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, 원고 A에게 75,856,715원 (상속금액 71,756,715원 + 장례비 손해 1,600,000원 + 위자료 2,500,000원) 및 그 중 1심에서 인용된 50,559,0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. 9. 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. 3. 4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,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5,297,630원에 대하여는 2013. 9. 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. 1. 27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피고 B에게 74,256,715원 (상속금액 71,756,715원

+ 위자료 2,500,000원) 및 그 중 1심에서 인용된 49,759,0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. 9. 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. 3. 4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,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4,497,630원에 대하여는 2013. 9. 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. 1. 27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,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(피고의 항소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이유 있음)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윤성

판사 정우철

판사 김승현